

대구예술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2.05.31.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2. 인권침해 등 :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3. 성희롱 :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학교 구성원 : 대구예술대학교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교수, 직원 및 학생
6. 피해자 :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사람
7. 가해자 :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가한 사람
8. 신고인 :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신고한 사람
9. 피신고인 :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10. 당사자 :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11. 관련부서 : 당사자의 소속부서·학과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

- ## 제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피해자구제, 예방 및 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조사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조사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교육과 활동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 사업 운영
6.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인권 보호 관련 업무

제7조(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사무처장, 교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및 규칙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권조사위원회)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 발생 시 사건의 조사·처리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인권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수, 직원, 학생 및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은 학생 간 사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1인의 간사를 둔다.

⑤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가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학부(과)의 교수·강사·조교인 경우
5.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행정부서의 직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중재·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6조(회의)

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신고)

①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8조(신고의 각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고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제15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제19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진술서 제출과 출석이 요구 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일 3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의 해당 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피신고인, 사건 관련자,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제21조(당사자간 해결)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구제조치 등) ①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요청) 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거나 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 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신원의 노출 및 명예 훼손 포함)을 끼친 경우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센터장, 운영위원, 심의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장, 운영위원, 심의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발 방지 조치)

①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대책 수립 방안을 시행한다.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준용)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관계부처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처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